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488호(號) 1931(昭和 6)년 12월 21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615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[朝鮮總督府鐵道], 사설철도[私設鐵道], 궤도[軌道] 및 항로[航路] 간[間]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 중(中) 1931(昭和 6)년 12월 2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12월 21일

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8조(條) 중(中) 제1호(號)를 제2호(號)로, 제2호(號)를 제3호(號)로 개정(改正)하고 아래[左]의 1호를 추가(追加)함.

- 1 환상선(環狀線)을 일주(一周)하는 경우의 통용기간(通用期間)은 각(各) 권[券片]마다 여객규칙(旅客規則) 제5조(條) 편도승차권(片道乘車券)의 예(例)에 의(依)하여 계산(計算)한 통용기간(通用期間)의 합산일수(合算日數)로 함.